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1.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제1조 <생략></p> <p>제2조 (용어정의)</p> <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p> <p>6.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채권거래에 있어서 발행 및 담보대출 등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또는 비밀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은행이 교부하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p> <p>7~15. <생략></p> <p>제3조 ~ 제4조 <생략></p> <p>제5조 (공인인증서 사용 및 관리)</p> <p>①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p>	<p>제1조 <좌동></p> <p>제2조 (용어정의)</p> <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좌동></p> <p>6.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채권거래에 있어서 발행 및 담보대출 등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또는 비밀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은행이 교부하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p> <p>7~15. <좌동></p> <p>제3조 ~ 제4조 <좌동></p> <p>제5조 (인증서 사용 및 관리)</p> <p>①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p>	<p>-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p> <p>-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p> <p>-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p>

<p>2.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때</p> <p>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거래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p> <p>③ 은행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거래서비스 재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20조 ~ 제22조 <생략></p>	<p>2.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때</p> <p>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해 거래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p> <p>③ 은행은 이용자가 인증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거래서비스 재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20조 ~ 제22조 <좌동></p>	<p>정 반영</p> <p>- 전자서명법 개정 반영</p>
--	--	----------------------------------

2. 개정시행일 : 2020년 12월 21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 적용